

한국은행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2025. 6.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이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강원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후심사 자료제출) 강원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출금원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사본)
3. 금리산출표(사본)
4.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5. 기타 강원본부장이 요청한 서류

제4조(평가관리 기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금리 감면폭(30%)
2. 제출자료의 정확성(20%)
3. 제출기한 준수 여부(20%)
4. 규정 준수 여부(20%)
5. 제도에 대한 이해도(10%)

제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0. 3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0. 8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 12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2. 12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 7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 9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7.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②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우선지원한도는 2006. 11월 이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여 배정한다.
- ③ 종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선지원한도 대상 대출취급액은 대출만기시까지 우선지원한도 대상에 포함하며 만기후 대환 또는 연장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 2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 8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10. 7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② 2010.1.1 ~ 2010. 4. 30 기간 중에 C2자금 최장지원기간(2년) 경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건은 재연장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 3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0)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강원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10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강원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3. 6.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3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강원본부 총액한도대출과 시행일 전에 취급한 전략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4. 6. 1)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4년 9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강원본부 총액한도대출과 시행일 전에 취급한 전략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4.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금융기관의 2015년 9월 대출취급 실적부터 적용)

부 칙 (2016.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금융기관의 2016년 3월 대출취급 실적부터 적용)

부 칙 (2016.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금융기관의 2016년 5월 대출취급 실적부터 적용)

부 칙 (2017.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1일(2017년 8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2017년 9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강원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8.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7월 1일(2018년 9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2월 1일(2019년 4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2019년 11월 한도 배정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6월 15일(2020년 8월 한도 배정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2021년 11월 한도 배정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2022년 3월 한도 배정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2023년 6월 한도 배정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8.)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한도 배정 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5.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¹⁾²⁾

지원대상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A1	창업기업	일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업종 영위기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제조업(C) 3) 건설업(F) 4) 정보통신업(J) 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A2	벤처기업	일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 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
A3	혁신기업	일반	-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제품임을 확인한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 - 국제특허등록 업체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 ISO, JIS, UL, CE ³⁾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기술신용정보 대출을 받은 업체 (기술력 평가 결과 우수 수준 이상 (T1~T3등급)을 요건으로 함)
A4	녹색기업	일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EDP) 인증제품 생산업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우수 그린비즈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기타 환경정화설비 생산업체 등 환경개선관련 제조업체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전략	-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다만,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E, G~N, P~S 업종)의 경우 0.5%를 초과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등

지원대상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²⁾
A6	추천기업 ⁴⁾	일반	1) 춘천상공회의소, 원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전략	- 강원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별표1-1> 강원지역 주력산업 참조) 또는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 ⁴⁾
A9	전입기업	일반	-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강원지역으로 이전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별표1-2> 참조)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일반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전략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A14	명절·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⁵⁾	일반	- 설, 추석 등 자금성수기에 운전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 - 재해, 노사분규, 연쇄부도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업체
A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특별	-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 도소매업(KSIC: 45~47) 2) 운수업(KSIC: 49, 51~52) <택시 운송업(49231) 중 개인택시업은 제외> 3) 여행업(KSIC: 752) 4) 음식숙박업(KSIC: 55~56) 5) 여가업(KSIC: 90~91) 6) 조선업(KSIC: 311) 7) 해운업(KSIC: 501~502)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위기정후지역 소재 업체 중 테크노파크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⁴⁾

- 주: 1)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
3)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인증),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국가표준규격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인증),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 품질인증)
4) 유관기관 추천·선정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강원본부장이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강원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1. 강원지역 주력산업¹⁾

산업명	코드	산업분류명
천연물 바이오소재	1042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895	인삼식품 제조업
	108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422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211	생물 의약품 제조업
	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세라믹 원료·소재	20129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디지털 헬스케어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2	치과기공물 제조업
	27193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기준(KSIC, 제11차)

2.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

- 1)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 2)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및 강원특별자치도청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 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획득업체
- 4)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테크노파크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분류기준

구 분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 11차)	업 종
제 조 업	C10~C34	업종제한 없음
건 설 업	F41~F42	업종제한 없음
운 송 업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단, 본사가 강원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한함)
	H493	도로 화물 운송업 (단, 본사가 강원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한함)
	H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단, 본사가 강원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한함)
정보통신업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0221	프로그램공급업
	J61299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M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M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M714	시장조사업(여론조사업 제외)
	M71531	경영컨설팅업
	M72122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N75994	포장 및 충전업

<별표2>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²⁾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1차)
전문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행정업	846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주: 1)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
- 2)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도 강원본부장이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특히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명에 호프, 비어, 병원 등 제외업종으로 판단되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불건전, 사행성 조장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